

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센터 규정

제정 2006. 3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목적) 본 규정은 지역내 산·학·연의 기술개발자원 (연구인력 및 장비 등) 을 결집시켜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 공동장비 활용, 공동연구개발, 기술 의 확산 및 사업화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 및 우량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시키는 목적으로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(이하 “산학협력단” 라 한다)이 산업자원부, 지방자치단체 및 산업체와의 연계를 통해 설립한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연구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 (명칭 및 소재지) 본 센터는 「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성소재개발 센터, Center for Efficacy Assessment and Development of Functional Foods and Drugs」 (이하 “센터 또는 RIC”라 한다) 라 칭하며,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.

제 3 조 (업무)

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장비 활용
2. 연구개발
3. 인력양성
4. 창업지원
5. 개발 기술 산업화
6. 네트워크
7. 기술이전 · 지도
8. 마케팅
9. 기타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

② 제1항에 열거한 각 사업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2 장 조 직

제 4 조 (소장)

- ① 본 센터에 소장을 둔다.
- ② 소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소장은 센터를 대표하며,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.
 - 1. 센터 설치·운영 사업계획의 수립
 - 2. 센터 설치·운영 과정의 조정·감독 및 보고
- ④ 소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강의 책임시간을 감면할 수 있다.

제 5 조 (연구교수, 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 및 조교) 본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연구원 및 보조연구원을 둘 수 있다.

- ① 연구교수는 이 대학교의 전임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.
- ② 연구원으로 전임연구원, 연수연구원 (박사후연구원, 인턴연구원), 객원연구원 등을 둘 수 있으며,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보조연구원과 조교는 해당업무의 수행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.
- ④ 연구교수, 연구원 및 보조 연구원의 복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대학교 규정을 따른다.

제 6 조 (직원 및 조교) 본 센터의 행정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직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.

- ① 사무직원과 조교는 센터의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.
- ② 직원 및 조교의 임면, 복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규정을 따른다.

제 7 조 (기구) 본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효능평가부, 소재개발부 및 기업지원부를 둔다.

제 8 조 (효능평가부)

- ① 부장은 소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효능 평가부는 효능평가 관련 연구개발, 장비 구축과 활용 및 인력양성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.

제 9 조 (소재개발부)

- ① 부장은 소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소재개발부는 소재개발 관련 연구개발, 장비 구축과 활용 및 인력양성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.

제 10 조 (기업지원부)

- ① 부장은 소장이 위촉하며,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기업지원부는 센터의 개발기술 사업화, 기술이전·지도, 창업지원, 마케팅 및 네트워크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.

제 3 장 위 원 회

제 11 조 (위원회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·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, 장비심의위원회, 자문위원회를 둔다.

제 12 조 (운영위원회)

- ① 운영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, 위원은 관련기관, 지역산업체 및 센터참여 교원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기본 운영방침
 - 2. 사업계획, 예산 및 결산
 - 3. 규정 및 내규의 제정 및 개·폐
 - 4. 공동연구과제의 선정, 기획 및 평가
 - 5. 자체평가 관련사항
 - 6. 기타 사업 추진상 필요한 사항

- ④ 위원회는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3 조 (장비심의위원회)

- ① 장비심의위원회는 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, 위원은 센터 소속 연구원과 관련기관·참여업체에 소속된 자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장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장비 및 기기의 수급계획
 - 2. 장비 및 기기의 도입, 추천, 선정 및 구매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
 - 3. 장비 및 기기의 운용, 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소장이 위임하는 사항
- ④ 장비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 소집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 14 조 (자문위원회)

- ① 센터의 연구 및 운영방향, 연구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.
-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기관, 산업체 및 관련전문가 중에서 소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연임할 수 있고,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제 4 장 재 정

제 15 조 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다음으로 충당한다.

- 1. 중앙정부 지원금
- 2. 지방자치단체 지원금
- 3. 참여업체 지원금
- 4. 한림대학교 지원금

5. 연구용역수입, 공동기자재 사용 수수료, 교육훈련참가비 및 기타수입

제 16 조 (사업비 관리) 사업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비관리 및 회계관리 내규로 정한다.

제 17 조 (회계연도) 센터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 18 조 (예산과 결산) 센터의 매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은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센터사업 관련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.

제 19 조 (감사) 센터의 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산업자원부가 지정한 전담 기관에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5 장 보 칙

제 20 조 (규정변경) 이 규정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과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.

제 21 조 (세부사항)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 22 조 (준용)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센터 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3월부터 시행한다.